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관련 Q&A

■ 응시자격요건 관련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절차는 어떻게습니까?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이며,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학위, 자격증 등 1개 이상의 응시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선발단위의 경우 복수의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의 응시요건이라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 ※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응시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기관에 일괄 조회할 예정이므로 원서접수시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 본인의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이용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
- 시험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중증장애인 판정은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 원서접수 마감일(2024.4.1.) 현재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된 사람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나요?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2024.4.1. 현재)입니다. 이 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동 법률 제6조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자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로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복수의 선발단위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 2개 이상 선발단위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요건)만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까?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임용예정기관(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경력·학위·자격증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1개 이상의 응시요건 충족 시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응시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관련분야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경력 인정여부는 서류전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 시험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심사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들의 경력이 관련분야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력 요건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했을 때 관련분야에서 퇴직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시험공고일이 2024.2.16.이므로 역산하면, 2019.2.15.에서 2024.2.15.까지 선발 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에 재직된 경력이 하루라도 있으면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나요?

-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격증' 응시요건이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경력' 응시요건에만 해당합니다.



올해(2024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또는 자격증) 취득 예정인데 응시가 가능한가요?

- 공고문 상의 최종시험 예정일(2024. 6. 21.)까지 취득하는 경우 응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학위취득은 학위수여일(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예정일(2024. 6. 21.) 이전이어야만 함



회사 등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하며, 보완 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가입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대 요건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하여야만 인정되나요?

- 우대요건은 2개 이상 설정되어 있는 선발단위의 경우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반영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24. 4. 1. 예정)까지 충족하는 경우 서류전형에만 반영됩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 <근무경력의 계산> 근무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예) 인턴경력 3개월 + 행정도우미 6개월 + 계약직사원 1년 = 총 1년 9개월(주 40시간 기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경력은 “주 9시간” 강의한 경우에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예) 시간강사로 1년간 주 6시간 강의한 경우 1년 × (6시간/9시간) = **8개월 인정**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는데, 별도 계산하여 경력 합산이 가능한가요?

-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포함)한 복수의 경력은 동시에 인정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



원서접수를 하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가입해야만 하나요?

- 그렇습니다.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과 우편접수를 모두 해야 하나요?

-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하셔야 완료됩니다.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를 일단 접수한 후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응시요건 등 수정이 불가능하며, 취소기간 중에도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 2024.3.26.(화) 09:00 ~ 4.1.(월) 18:00

※ 취소마감일 : 4.4.(목) 18:00



추가서류 작성 서식의 모든 부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 추가서류는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지원하는 선발단위 응시요건과 관련된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 그 외 부분은 선택사항(응시자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성적공개 관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성적은 공개하나요?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성적은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평정결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 시험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대법원 2008.12.14. 선고 2008두8970 등

■ 면접시험 관련



면접시험 편의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면접시험은 자료작성, 개인발표(7급 이상에 한함) 및 면접위원과의 질문응답 등으로 진행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제공 항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항목에 따라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별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예) 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면접시간 1.5배 연장

⇒ 제출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소견서 불인정)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이 2024.4.1.이므로 역산하면, 2022.4.2. 이후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면접시험 종료 후 경력 조회 대상자는 합격자로 볼 수 있나요?

- 경력 조회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검증 단계이기는 하나, 경력 조회가 최종 합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력 조회는 합격대상자(선발예정인원, 후순위자 등)에 대하여 진행하는 최종 검증 단계로, 제출한 경력내용과 조회결과가 일치하고 관련 사항이 확인된 경우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임용 등 합격 이후 관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기관에서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시기를 결정하므로 임용시기는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해당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은 언제 실시하나요?

- 2024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은 **2024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 후 호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책정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의 경력환산율표 등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 ※ 다만, 응시자격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봉 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임용예정기관 담당에게 문의



합격자는 차후 해당 직무에서만 계속 일하게 되는 건가요?

- 경력채용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속장관에 의해 전보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함
- ※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기관 내에서는 5년, 다른 기관으로는 7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속장관에 의해 전보될 수 있습니다.(직위 이동은 제한됨)